

2018년도 에코마일리지 운영계획

2018. 2

기 후 환 경 본 부
(에너지시민협력과)

'18년도에 달라지는 사업내용

추진 목표 - 210만 회원 참여('20년까지 230만)

구 분	2017년(실적)	⇒	2018년	⇒	2020년
회원 수(누적)	198만		210만		230만

항 목	달라지는 내용	비 고
에너지진단 시스템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가구회원의 에너지 절감 촉진을 위하여 자가 에너지 진단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 및 자가 점검 앱 개발·보급 ▷에너지 절감률이 미흡한 단체회원에 대하여 에너지 설계사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진단·컨설팅 지원 	
개인회원 유지 인센티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2013년 이전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유지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안 시범 운영 	
단체회원 인센티브 상향 조정 및 공공기관 인센티브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단체회원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세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수('17) ⇒ 최우수, 우수, 장려('18) ▷단체회원 인센티브 지급금액 상향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~500만원('17) ⇒ 50~1,000만원('18) ▷공공기관(자치단체 산하기관 제외) 인센티브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0~200만원('18) 	단체회원 인센티브 구조 강화
자치구 활동 지원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지급기준 세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그룹 24,000천원, 2그룹 15,000천원 3그룹 3,000천원 ▷자치구 평가항목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체회원 및 가구회원 배점 강화(30점⇒45점) - 온실가스 감축실적 배점 하향 조정(30점⇒10점) 	자치구 의견 수렴 결과 반영
소멸 마일리지 기부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개인회원이 약관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소멸 예정 마일리지에 대한 기부약정 체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 회원 : 회원 가입시 개별 동의 - 기존 회원 : 변경약관 고지를 통한 개별 동의 	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
사후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에너지 절감 안내 등 문자 발송을 통한 회원 사후관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% 이상 문자발송 회원(추가) - 10% 이상 에너지 사용량 증가 회원(추가) - 인센티브 확정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 안내 - 마일리지 미사용자 사용 수시 안내 	

2018년 에코마일리지 운영계획

에코마일리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1 사업 개요

□ 추진 목표

- 회원수 210만, 에너지 절약 150천TOE, 온실가스 감축 300천tCO₂

구 분	2017년(실적)	2018년	2020년
회원 수(누적)	198만	210만	230만
에너지 절약	63천TOE	150천TOE	150천TOE
온실가스 감축	120천tCO ₂	300천tCO ₂	300천tCO ₂

※ 석유환산톤(TOE, Ton of Oil Equivalent) : 다른 연료의 열량을 원유 1TOE=1000만kcal로 환산한 양

- 연도별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 현황

구 분	합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
에너지절감(TOE)	889,205	-22,083	47,360	101,501	153,375	367,831	210,694	8,444	63,384
온실가스(tCO ₂)	1,856,378	-39,164	85,880	308,192	297,565	729,545	414,188	21,008	119,863

□ 추진 근거

-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(녹색생활운동의 촉진)
-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, 제25조의2(에코마일리지 제도)
 -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, 수도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을 절약한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
 - 시장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
 -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,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

2 에코마일리지 운영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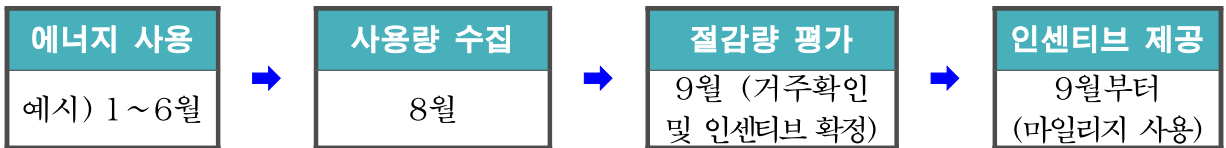
① 개인회원 관리 계획

회원 가입

- 서면(서울시·자치구 현장 행사시 등) 또는 개별 홈페이지 신청 가입

인센티브 부여

- 주요 절차



- 선정 대상

- 전기(필수), 도시가스, 수도, 지역난방 등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하여 5% 이상 절감 회원에게 마일리지 지급

- 부여기준

에너지 감축률	인센티브
5% ~ 10% 미만	1만 마일리지(1만원 상당)
10% ~ 15% 미만	3만 마일리지(3만원 상당)
15% 이상	5만 마일리지(5만원 상당)

인센티브 사용처

상품권 (2종)	ETAX 마일리지전환	기부(2종)	친환경상품 (3종)	카드 충전 (2종)	아파트 관리비 차감
	 서울특별시	 서울에너지복지 시민기금		 money	
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상품권	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등	에너지빈곤층 사막 나무심기	실내 보온텐트 LED 스탠드 절전형 멀티탭	교통카드 충전권 카드포인트 전환	아파트관리비 차감

제도 개선

- 감축 실적이 미흡한 회원 에너지진단 : 자가 점검 가이드라인 배포 및 앱 개발
- 2013년 이전 개인회원 대상 에너지 절감률 유지 인센티브 시범 운영
- 개인회원 10% 이상 에너지 사용량 증가시 에너지 절감 안내 문자 발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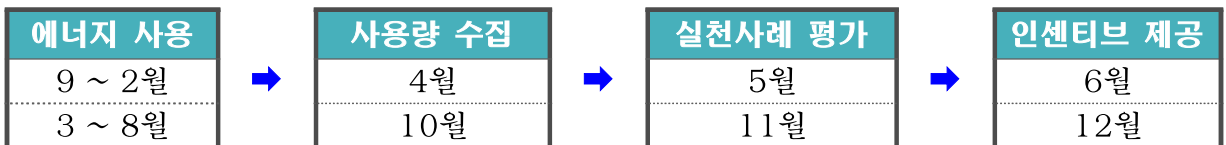
② 단체회원 관리 계획

가입대상

-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법인·기업, 복지·교육기관, 소상공인, 종교단체 등

우수사례 평가

- 주요 절차



- 평가 기준 : 연 2회(5월, 11월)

- 상반기 평가 : '18.5월(평가대상 기간 : '17.9월 ~ '18.2월, 6개월)
- 하반기 평가 : '18.11월(평가대상 기간 : '18.3월 ~ '18.8월, 6개월)

- 우수단체 선정

- 전기(필수), 도시가스, 수도, 지역난방 중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원 등록
- 직전 2년 동일기간(6개월)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10%이상 감축한 단체로 절감사례를 제출한 단체

구 분	일반건물 및 공공기관	학교
평가방법	우수사례 전문가평가(심의위원회 구성)	서울시교육청 평가
평가기준	절감률(40점), 절감량(40점), 우수 실천사례(20점)	절감률(35점), 절감량(35점), 우수실천사례(15점), 태양광 설치(10점), 에너지수호천사단 가입(5점)

인센티브 부여 : 공공기관 신설 및 인센티브 상향 조정 검토

구 분		인센티브 지급		
		최우수(1)	우수(2)	장려
일반 건물	1,000TOE 이상	10,000천원	7,000천원	5,000천원
	200 이상~1,000TOE 미만	6,000천원	5,000천원	3,000천원
	50 이상~200TOE 미만	2,000천원	1,500천원	1,000천원
	10 이상~50TOE 미만	1,000천원	700천원	500천원
공공기관(지자체 산하기관 제외) ※신설		2,000천원	1,500천원	1,000천원
학교(초·중·고)		7,000천원	6,000천원	5,000천원

※ 에너지절감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단체 선정에서 탈락하였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10%이상 감축 회원은 일정액(50TOE 이상 20만원 상당, 50TOE 이하 10만원 상당)의 인센티브(보상품) 지급

제도 개선

- 절감률이 낮은 회원 대상 에너지설계사 등을 활용한 에너지진단·컨설팅 지원
- 서울시 수탁업체 등의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체 평가에 에너지 절감률 반영

③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

지원방향

- 기본적인 교육·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비를 자치구에 정률 지원하고 일부 재원은 자치구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
- 실질적 감축실적이 있는 가구회원 및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단지, 다소비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항목 배점 조정

☞ 전체 가구 수 대비 가구회원 가입률은 24.7%로 지속적인 가입 확대 가능

※ 전체 가구 수 4,219,001가구, 가구회원 1,043,588가구

☞ 전체 에너지 절감(63.384TOE)에서 단체회원 비중 14.2%(9,032TOE)

※ 단체회원은 가입률(54,860회원, 2.8%)에 비해 높은 에너지 절감률(14.2%) 효과

지원계획 - 500백만원(자치단체경상보조)

- 교육·홍보 등 자치구 활동비 지원 : 자치구별 8백만원 균등 지원(200백만원)
- 우수 자치구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(300백만원) : 상·하반기 150백만원

구 분	1그룹	2그룹	3그룹
평가순위	1~5위	6~15위	16~25위
인센티브(천원)	12,000×2회	7,500×2회	1,500×2회

우수 자치구 평가

- 평가주기 : 연 2회(상반기 : '17.10 ~ '18. 3, 하반기 : '18. 4 ~ 9)
-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'17. 8 ~ '18. 8월로 평가(자료 확정 가능시기 감안)
- 평가항목(안) :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
평가항목		평가점수		조정사유	
		'17	'18		
회원 가입 실적	모든 개인회원	10	10		
	가구회원	5	10	에너지 절감량 산출 가능 가구 가입 실적에 대한 평가점수 반영	
	단체 회원	모든 단체회원	20	25	단체회원 가입 집중 관리
		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	5	10	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 사업장 가입 실적 평가점수 반영
온실가스 감축 실적		30	10	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표 평가점수 조정 및 감점 3~5점으로 축소	
회원정보 정비 실적		10	10		
홍보 실적		20	25	홍보 강화 필요에 따라 평가점수 상향 조정	

※ '18년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별도 수립(평가항목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포함)

3 제도 운영 개선 추진

① 단체회원 중심 회원가입 확대 추진

▷ 개인회원 : 회원 비중 97.2% ⇔ 에너지 절감 비중 14.2%

▷ 단체회원 : 회원 비중 2.8% ⇔ 에너지 절감 비중 85.8%(2017년말 기준)

구 분	회원 수(비중)	에너지 절감량(비중)
계	1,983,192(100.0%)	63,384(100.0%)
개인회원	1,928,332(97.2%)	9,032(14.2%)
단체회원	54,860(2.8%)	54,352(85.8%)

□ 실질적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단체회원 중심으로 회원가입 확대 추진

'17 54천 개소 ⇒ '18 60천 개소 (11.1% 확대)

○ 200TOE 이상 ~ 2,000TOE 미만 건물에 대한 집중관리

- 자치구, 관련단체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하여 단체회원 가입에 행정역량 투입 강화
⇒ 200TOE 이상 사용건물 명단을 확보(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시스템)하여
자치구별 회원가입 독려(200개소 가입시 연간 약 5,000TOE 절감 효과 발생)

○ 단체회원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구 활동실적 및 단체 평가 개선

- 단체회원 평가 인센티브 상향 조정 : 50~500만원 ⇒ 50~1,000만원
-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중 단체회원 관련 평가항목 배점 상향 조정 :
25점 ⇒ 35점

② 에너지 절감량 미흡 회원에 대한 관리 강화

▷ 1,043천 가구 중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가구는 168천 가구로 16.1%에 불과함

가구회원 수	인센티브 부여	인센티브 미확정·미부여
1,042,934	168,141(16.1%)	874,793(83.9%)

▷ 단체회원 중 공공기관, 복지시설, 학교, 종교단체 등의 에너지 절감율 미흡

아파트단지	공공기관	복지시설·학교	종교단체	법인·기업
△36.5%	7.4%(증가)	10.3%(증가)	△0.4%	△66.6%

- **감축실적이 없거나 저감률이 미흡한 가구회원 대상 에너지진단 추진**
 - 가구회원의 에너지 절감을 촉진을 위한 자가 에너지진단 시스템 구축
 - 자가 에너지진단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(홈페이지) 및 자가 점검 앱 개발·보급
- **공공기관, 복지시설, 학교, 종교단체 등 에너지 절감률이 낮은 단체에 대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**
 - 에너지 절감률이 낮은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설계사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한 1:1 온실가스 진단·컨설팅 지원
 - 위탁업체 등 서울시와 업무연계가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탁업체 평가 등에 에너지 절감율을 반영하도록 관리 강화
 - 공공기관(공공도서관, 어린이집 등), 시립·구립 복지시설 등을 단체회원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인센티브 부여

③ 에너지 절감률 유지 인센티브(개인회원) 시범 운영

<마일리지 관련 제도 운영상 문제점>

▷ 에너지 절감률은 최근 6개월 평균 절감실적을 직전 2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(인센티브 동기 감소)

1년차	2년차	3년차	4년차
△9.1%(절감)	△12.3%(절감)	△4.3%(절감)	2.4%(증가)

※ 회원의 평균 에너지 절감률 시계열 추이

- **에너지 절감률을 유지하는 회원의 경유에도 인센티브 부여**
 - 2013년 이전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경유에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안 시범 운영

④ 미사용 마일리지 최소화 추진

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: 약관 개정 및 개별 동의 후 추진

〈'17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〉

“미사용 마일리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,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일정 비율 만큼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?”

○ 에코마일리지 이용약관 개정(추가)

약관 개정(안) — 소멸 마일리지 기부 관련 조항 추가

“유효기간 만료로 소멸예정인 잔여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소외계층 후원을 위한 서울에너지시민복지기금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.”

○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기부약정 체결

구 분	기부 절차	비 고
신규 회원	회원 가입 시 약관 제시 ⇒ 개별 동의 ⇒ 기부 약정	
기존 회원	약관 변경 내용 고지 ⇒ 개별 동의 ⇒ 기부 약정	

※ 변경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소멸 대상 마일리지를 분기별로 기부

※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('18.1월 유권해석 의뢰)에 따라 제도 개선 추진
(쟁점사항)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행위가 '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필요

회원 사후관리 강화

○ 10% 이상 에너지 사용량 증가시 에너지 절감 안내 문자 발송

기존 문자발송	추가 사항
① 5% 이상 절감 회원 중 주민등록번호 미등록자 ② 인센티브 확정(마일리지 사용 안내) ③ 마일리지 미사용자 사용 안내(수시)	① 5% 이상 절감 회원(전체) ② 10% 이상 에너지 사용량 증가 회원

4 인식 확산 및 회원 가입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

□ 주요 시기별 보도자료 제공

- 계획 수립, 사업 추진에 따라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효과 제고

제공시기	제 목	자료 제공 방향
2월	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개선	▷ '18년도 제도 개선 사항 소개 ▷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등
3월	에코마일리지 회원 200만 돌파	▷ 에코마일리지 회원 현황 및 향후 목표 ▷ 에코마일리지 주요 성과
5~6월	기업은 에너지 이렇게 절감했다	▷ 단체회원 평가결과 및 시상 현황 ▷ 단체별 에너지절감 주요 사례 소개
6~7월	여름철 에너지절약은 이렇게	▷ 여름철 에너지절약 요령 및 착안사항 ▷ 에너지절약 주요 사례 소개
9~10월	에코마일리지 참여 이벤트 개최	▷ 에너지절약 생활수기 이벤트 안내 ▷ 전년도 이벤트 당첨 주요사례 소개
10~11월	겨울철 에너지절약은 이렇게	▷ 겨울철 에너지절약 요령 및 착안사항 ▷ 에너지절약 주요 사례 소개

5 연 간 재 정 운 영

(단위 : 백만원)

예산과목	예산액	내역	집행계획			
	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계	5,124		988	1,623	788	1,725
사무관리비	210	홍보비 및 수수료	60	45	60	45
공공운영비	114	시스템 유지관리비	28	28	28	30
기타보상금	4,300	개인회원 인센티브	700	700	700	800
		단체회원 인센티브	-	700	-	700
자치단체 경상보조	500	홍보 활동비	200	-	-	-
		우수 자치구 인센티브	-	150	-	150

붙임

개인회원 인센티브 지급 절차

